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함(2027.1.1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사내대학원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내대학원의 교사·교원 확보 기준 등 (안 제39조~제41조 개정)

- 사내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교사 및 교원 확보 기준을 규정

나. 사내대학원의 설치인가 절차 (안 제36조 개정)

- 기업의 사내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내용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인가 여부 결정

다. 사내대학원의 변경인가 절차 (안 제36조의2 개정)

- 사내대학원이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 절차에 관해 규정

라. 채용후보자의 범위 (안 제36조의3 신설)

-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에 포함되는 ‘채용후보자’의 범위를 규정

마.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 (안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석사 2년 이상, 박사 2년 이상, 석박사 통

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규정 등

바. 사내대학원의 학점 인정 범위 (안 제44조제4항제2호 신설)

- 대학원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사내대학원 입학 전에 교육과정과 연계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학점 인정 범위 규정

사. 사내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4조의2 신설)

-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내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아. 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안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 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사내대학”을 각각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사내대학의 설치인가)”를 “(사내대학·대학원의 설치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대학원”)”으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를 “사내대학·대학원 설치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사내대학”을 각각 “사내대학 및 석사학위과정만 운영하는 사내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내대학임”을 “사내대학·대학원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내대학 설치계획서”를 “사내대학·대학원 설치계획서”로, “사내대학 설치인”을 “사내대학·대학원 설치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사내대학·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로, “사내대학 설치인가 연기신청서”를 “사내대학·대학원 설치인가 연기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한다.

제36조의2의 제목 “(사내대학의 변경인가)”를 “(사내대학·대학원의 변

정인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 · 대학원”으로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사내대학 · 대학원의 교육대상)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란 채용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제38조의 제목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를 “(사내대학 · 대학원 운영경비의 부담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 · 대학원”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을 “(사내대학 · 대학원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내대학”을 각각 “사내대학 · 대학원”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사내대학의 교사)”를 “(사내대학 · 대학원의 교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 · 대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44조제2항에 따라 석사 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통합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사내대학의 교원)”을 “(사내대학 · 대학원의 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학생정원”을 “학생정원(사내대학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의 1.5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내대학원은 관련 분야 교원을 적어도 7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의 제목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을 “(사내대학·대학원 학칙의 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사내대학의 학년도·학기 등)”을 “(사내대학·대학원의 학년도·학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부터 제7항(중전의 제5항)까지 중 “사내대학”을 각각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한다.

③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각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제44조의 제목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을 “(사내대학·대학원의 교육과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내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44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내대학은”을 “사내대학·대학원은”으로, “사내대학의”를 “사내대학·대학원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를 “제3호”로,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등교육법」”을 “사내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사내대학”을 각각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사내대학은 제45조제1항”을 “사내대학·대학원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으로, “사내대학의”를 “사내대학·대학원의”로 한다.

2. 사내대학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①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내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학교”는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45조의 제목 “(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등)”을 “(사내대학·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사내대학·대학원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사내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 사내대학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①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한다.

1. 사내대학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2. 사내대학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박사학위과정 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44조제5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위논문 제출, 심사 및 공표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 중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제44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제45조 중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50조제1항 중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은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본다.

제46조의3(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취소) 사내대학원의 장은 제46조 또는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제44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내대학원이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의 제목 “(사내대학의 폐쇄신고)”를 “(사내대학·대학원의 폐쇄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내대학”을 각각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한다.

제51조의2 후단 중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를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 중 “사내대학”을 각각 “사내대학·대학원”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제8호 중 “사내대학형태”를 “사내대학·대학원형태”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사내대학의 계열별 구분 (제39조제3항 관련)”을 “사내대학·대학원의 계열별 구분 (제39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사내대학 교사의 구분 (제40조제1항 관련)”을 “사내대학·대학원 교사의 구분 (제40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 (제40조제2항 관련)”을
“사내대학·대학원 교사의 기준면적 (제40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사내대학의 교원산출기준 (제41조제1항 관련)”을 “사
내대학·대학원의 교원산출기준 (제41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사내대학·대학원의 계열별 구분(제39조제3항 관련)

계 열	소 계 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어학·문학·사회·신학·음악·미술·체육·무용 등
자 연 과 학·공 학 계 열	이학·해양·농학·수산·보건·약학·한약부·공학 등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5]

사내대학·대학원 교사의 구분(제40조제1항 관련)

교 사	구 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원격교육시설 포함),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및 그 부대시설
지 원 시 설	도서관, 학생복지시설, 행정실 및 그 부대시설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6]

사내대학·대학원 교사의 기준면적(제40조제2항 관련)

구 분 \ 계 열 별	인문·사회·예체능계	자연과학·공학계
학 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	10제곱미터	15제곱미터

사내대학·대학원의 교원산출기준(제41조제1항 관련)

구 분	계열별	인문·사회·예체능계	자연과학·공학계
	교원 1명당 학생수	25명	20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① (생략)	제30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별표 5에 따른 <u>사내대학</u>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설(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복지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에 설치하는 경우	3. ----- ----- <u>사내대학 · 대학원</u> ----- ----- ----- ----- ----- -----
③ 제1항에 따른 교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교육 ·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③ ----- ----- ----- -----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생 략)

2. 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
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
설로 사용되는 시설·건축물의
부지로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인가를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닌 부지

3. (생 략)

제36조(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
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
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 예
정일 9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
획

--.

1. (현행과 같음)

2. ----- 사내대학·대학
원 -----

3. (현행과 같음)

제36조(사내대학·대학원의 설치
인가) ① ----- 사내대
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
설(이하 “사내대학·대학원”

----- 사내대학·대학원
설치계획서-----

-----.

1. ~ 5. (현행과 같음)

6. -----

-- 사내대학 및 석사학위과정
만 운영하는 사내대학원-----

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 10.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략)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

7. -----

-- 사내대학 및 석사학위과정
만 운영하는 사내대학원-----

8. ~ 10. (현행과 같음)

② ----- 사내대
학·대학원임-----
-----.

③ (현행과 같음)

④ ----- 사
내대학·대학원 -----

-----.

⑤ -----
----- 사내대학·대학원 설치
계획서-----
----- 사내대학·

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제4항에 따른 계획승인 통보
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
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까지 사
내대학 설치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
는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⑧ (생 략)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
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
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
아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대학원 설치인-----
-----.

⑥ (현행과 같음)

⑦ -----

사내대학 · 대학원 설치인가 신
청서-----

----- 사내대학 · 대학원
설치인가 연기신청서-----
----- . ----- 사내대
학 · 대학원 -----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사내대학 · 대학원의
변경인가) ----- 사내대
학 · 대학원-----

-----.

1. ~ 4.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사내대학 · 대학원의
교육대상) 법 제32조제2항제1
호부터 제5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란 채용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제39조(사내대학의 설치기준)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

제38조(사내대학·대학원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

---- 사내대학·대학원 -----

-----.

제39조(사내대학·대학원의 설치기준) ① ----- 사내대학·대학원-----
--.

1.·2. (현행과 같음)

② 사내대학·대학원-----

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제40조(사내대학의 교사) ① 사내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 별표 6에 따른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③ -----
----- 사내대학·대학원-----
-----.

제40조(사내대학·대학원의 교사) ① 사내대학·대학원-----

-----.

② -----

-----.

----- 적용하며. 제44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통합하여 적용한다-----
-----.

③ (생 략)

제41조(사내대학의 교원) ① 사내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7에 따른 교원 1명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42조(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①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사내대학·대학원의 교원) ① -----
----- 학생정원(사내대학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의 1.5배)---.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내대학원은 관련 분야 교원을 적어도 7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42조(사내대학·대학원 학칙의 개정) ① 사내대학·대학원---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사내대학의 학년도·학기

등) ① 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제43조(사내대학·대학원의 학년

도·학기 등) ① 사내대학·대학원-----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각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

③ 사내대학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매 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④ 사내대학은 매 학기 취득기 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계절제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 휴업일, 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4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4조(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목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을 따를 수 있다.

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⑤ 사내대학 · 대학원-----

-----.

⑥ 사내대학 · 대학원-----

--.

⑦ 사내대학 · 대학원-----

-----.

제44조(사내대학 · 대학원의 교육과정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내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

③ 사내대학 · 대학원-----

-----.

③ 사내대학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근무경력에 구체적인 내용 및 근무경력의 학점 환산 기준은 해당 사내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신 설>

2. 해당 사내대학 입학 전에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이

④ 사내대학·대학원은 -----

----- 사내대
학·대학원의 -----
----- . ----- 제3호-----

----- 사내대
학·대학원-----.

1. 사내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

2. 사내대학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3. -----
사내대학·대학원 ---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

<신 설>

④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⑥ 사내대학·대학원-----

-----.

⑦ 사내대학·대학원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
----- 사내대학·
대학원의 -----.

-----.

제44조의2(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①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내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등) ① (생략)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심의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학교”는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45조(사내대학·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신 설>

<신 설>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사내대학·대학원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사내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 사내대학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46조의2(사내대학원의 학위수

여) ①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한다.

1. 사내대학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2. 사내대학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박사학위과정 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44조제5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에 관하여

<신 설>

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위논문 제출, 심사 및 공표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 중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제44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제45조 중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50조제1항 중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은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본다.

제46조의3(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취소) 사내대학원의 장은 제46조 또는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제44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내대학원이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 ③ (생략)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으면 제36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

제47조(사내대학·대학원의 폐쇄

신고) ① ----- 사내대학·대학원-----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사내대학·대학원-----
-----.

제51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내대학·대학원” -----
-----.

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8
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
설”로 본다.

제63조의2(평생교육시설 공시정
보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
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
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2항
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3과 같다.

③ ~ ⑥ (생 략)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교
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의 변경인가) -----

-----.

“사내대학·대학원”-----

-----.

제63조의2(평생교육시설 공시정
보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략)

4. 제35조에 따른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삭제

6. 제40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사 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41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원 기준: 2014년 1월 1일

7의2. 제45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자격 및 학생 정원 기준: 2016년 1월 1일

7의3. 제46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2016년 1월 1일

7의4. 삭제

8. ~ 18. (생략)

② (생략)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

-----.

1. ~ 3. (현행과 같음)

4. ----- 사내대학·대학원-----

6. ----- 사내대학·대학원-----

7. ----- 사내대학·대학원-----

7의2. ----- 사내대학·대학원-----

7의3. ----- 사내대학·대학원-----

8. ~ 1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7. (생략)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u>사내대학형태</u>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9. · 10. (생략) ② · ③ (생략)	-----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사내대학 · 대학원형태</u>----- ----- ----- 9.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